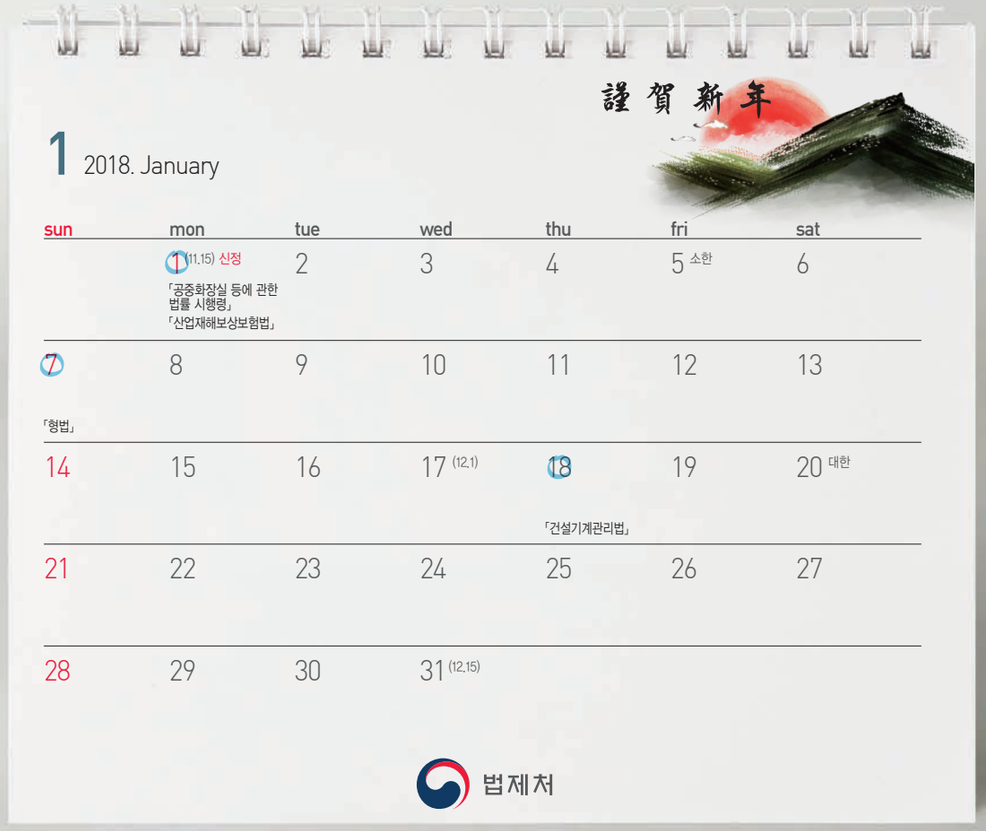
새 법령 소개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을 변경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형법」)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을 변경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 시행

-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도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악취없는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청소나 보수를 위해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나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의 강화(제7조)

1)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도록 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별표)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하도록 함.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도록 함.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월 1일 시행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 교사 · 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앞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형법」 1월 7일 시행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제62조제1항).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1월 18일 시행

-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새 법령 소개

1월 시행법령 목록 (2017. 12. 14.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0호	보건복지부	1. 1.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956호	국토교통부	1. 1.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국토교통부	1. 1.
4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40호	보건복지부	1. 1.
5	고등교육법	법률	제11212호	교육부	1. 1.
6	고등교육법	법률	제14054호	교육부	1. 1.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2호	고용노동부	1. 1.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행정안전부	1. 1.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70호	인사혁신처	1. 1.
1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0호	법무부	1. 1.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행정안전부	1. 1.
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5호	국토교통부	1. 1.
1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59호	교육부	1. 1.
1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7호	보건복지부	1. 1.
1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17호	보건복지부	1. 1.
16	국세기본법	법률	제14382호	기획재정부	1. 1.
17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3호	기획재정부	1. 1.
1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0호	국토교통부	1. 1.
19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912호	국방부	1. 1.
20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5호	국방부	1. 1.
2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91호	국방부	1. 1.
22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174호	국방부	1. 1.
23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38호	국방부	1. 1.
24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66호	국방부	1. 1.
2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471호	공정거래위원회 등	1. 1.
2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21호	환경부	1. 1.
2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6호	기상청	1. 1.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보건복지부	1. 1.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0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보건복지부	1. 1.
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14983호	농림축산식품부	1. 1.
3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특허청	1. 1.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2호	문화재청	1. 1.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48호	국토교통부	1. 1.
3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359호	산림청	1. 1.
3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47호	법원행정처	1. 1.
37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23호	법원행정처	1. 1.
38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제2756호	법원행정처	1. 1.
39	법인세법	법률	제14386호	기획재정부	1. 1.
40	산림기본법	법률	제15079호	산림청	1. 1.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4933호	고용노동부	1. 1.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388호	기획재정부	1. 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기획재정부	1. 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5호	기획재정부	1. 1.
4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19호	환경부	1. 1.
46	소득세법	법률	제13558호	기획재정부	1. 1.
47	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	기획재정부	1. 1.
48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기획재정부	1. 1.
49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기획재정부	1. 1.
5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2호	기획재정부	1. 1.
5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9호	기획재정부	1. 1.
5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청	1. 1.
5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67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1.
5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1호	환경부	1. 1.
5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령	제940호	국방부	1. 1.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8호	보건복지부	1. 1.
5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85호	보건복지부	1. 1.
58	의무 ·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42호	국방부	1. 1.
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국토교통부	1. 1.
60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국토교통부	1. 1.
6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국토교통부	1. 1.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84호	금융위원회	1. 1.
63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57호	환경부	1. 1.
64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4229호	환경부	1. 1.
6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01호	환경부	1. 1.

새 법령 소개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6호	환경부	1. 1.
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66호	행정안전부	1. 1.
68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행정안전부	1. 1.
69	지방세법	법률	제14475호	행정안전부	1. 1.
70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476호	행정안전부	1. 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11호	행정안전부	1. 1.
7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49호	국토교통부	1. 1.
7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6호	국토교통부	1. 1.
7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42호	국토교통부	1. 1.
75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40호	교육부	1. 1.
76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3호	특허청	1. 1.
77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5103호	환경부	1. 1.
7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국토교통부	1. 1.
79	해운법	법률	제14748호	해양수산부	1. 1.
80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58호	해양수산부	1. 1.
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1호	환경부	1. 1.
82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232호	환경부	1. 1.
8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0호	환경부	1. 1.
8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부	1. 1.
8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08호	산업통상자원부	1. 1.
8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농림축산식품부	1. 4.
8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3733호	산업통상자원부	1. 7.
88	형법	법률	제13719호	법무부	1. 7.
89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법무부	1. 7.
9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경찰청	1.10.
9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국토교통부	1.10.
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179호	산업통상자원부	1.13.
93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534호	국토교통부	1.18.
94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707호	국토교통부	1.18.
95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847호	국토교통부	1.18.
96	교통안전법	법률	제14538호	국토교통부	1.18.
97	교통안전법	법률	제14712호	국토교통부	1.18.
98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30호	국토교통부	1.18.
9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4호	환경부	1.18.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5호	환경부	1.18.
101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	환경부	1.18.
1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고용노동부	1.18.
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45호	국토교통부	1.18.
104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9호	환경부	1.18.
105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546호	국토교통부	1.18.
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553호	행정안전부	1.18.
107	철도안전법	법률	제14548호	국토교통부	1.18.
1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04호	환경부	1.18.
10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4호	국토교통부	1.25.
1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7호	국토교통부	1.25.
111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90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
112	국민연금법	법률	제14921호	보건복지부	1.25.
113	노인복지법	법률	제14922호	보건복지부	1.25.
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국토교통부	1.25.
1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948호	국토교통부	1.25.
1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13호	행정안전부	1.25.
11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9호	보건복지부	1.25.
1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04호	교육부	1.25.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웹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